



# 시 보



제1518호 2021. 10. 5.(화)

## 공 고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5
-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9
-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 33
-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4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21 - 1579호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 목 포 시 장

####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반영
- 타법 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특례사항 반영
-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등

#### 3.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반영(2건)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3조의4)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규정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안 제48조)
    - 자연녹지지역 안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 규정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반영(1건)**

-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17조의5)
  -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구체적인 용어 정의를 통해 규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객관적 판단지침 마련

□ **타법 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특례사항 반영(2건)**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안 제50조의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안 제53조의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조정(5건)**

-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적용 기준(안 제51조)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부 개정(안 별표9)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부 개정(안 별표10)
-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부 개정(안 별표11)
-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 신설(안 별표20)
  - 상업지역에 주거기능 중심인 주거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입지를 지양하고,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상업 중심 기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13조4, 제48조, 제50조의3, 제51조, 제53조의3,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20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9.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5. ~ 26.(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6.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계획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 정의) 제17조의4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가.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나.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48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1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의 나목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을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 가목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을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 가목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을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제7항,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관련)

1. 이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2.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90미만	600 이하	550 이하	500 이하
70이상~80미만	650 이하	600 이하	525 이하
60이상~70미만	700 이하	650 이하	550 이하
50이상~60미만	800 이하	700 이하	575 이하
40이상~50미만	9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30이상~40미만	1,000 이하	850 이하	625 이하
20이상~30미만	1,100 이하	900 이하	650 이하
10이상~20미만	1,200 이하	1,000 이하	675 이하
10미만	1,300 이하	1,100 이하	700 이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3조의4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제3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u></p>
<u>&lt;신 설&gt;</u>	<p><u>제17조의5(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 정의) 제17조의4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u>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u></li> <li>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u>도시계획도로</u></li> </ul> </li> <li>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과 주택</li> </ol>

	<p><u>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u></p> <p>가. <u>“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u></p> <p>나. <u>“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 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한다.</u></p> <p>3. <u>“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u></p>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p> <p>1. ~ 11. (생략)</p> <p>12. &lt;신설&gt;</p>	<p>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u></p> <p>가. <u>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u></p> <p>나. <u>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u></p>

	<p><u>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 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p> <p>1) <u>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u></p> <p>2) <u>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u></p>
<p><u>&lt;신 설&gt;</u></p>	<p><u>제50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u>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⑥ (생략)</p> <p>⑦ <u>&lt;신 설&gt;</u></p>	<p>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u></p>

<신 설>

제53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1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9]</b>  <b>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b>                      (제27조제7호 관련)</p> <p>가. (생략)</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p> <p>다. ~ 거. (생략)</p>	<p><b>[별표 9]</b>  <b>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b>                      (제27조제7호 관련)</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p> <p>다. ~ 거. (현행과 같음)</p>
<p><b>[별표 10]</b>  <b>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b>                      (제27조제8호 관련)</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p> <p>나. ~ 타. (생략)</p>	<p><b>[별표 10]</b>  <b>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b>                      (제27조제8호 관련)</p> <p>가. -----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p> <p>나. ~ 타. (현행과 같음)</p>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 타. (생략)

<신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9호 관련)

가. -----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20]**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제7항,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관련)

1. 이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2.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준주택(준주택용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  
 한다)은 제외한다.

3.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80이상~90미만	600 이하	550 이하	500 이하
70이상 ~80미만	650 이하	600 이하	525 이하
60이상~ 70미만	700 이하	650 이하	550 이하
50이상 ~60미만	800 이하	700 이하	575 이하
40이상 ~50미만	9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30이상 ~40미만	1,000 이하	850 이하	625 이하
20이상 ~30미만	1,100 이하	900 이하	650 이하
10이상 ~20미만	1,200 이하	1,000 이하	675 이하
10미만	1,300 이하	1,100 이하	700 이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 2021- 1585호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목 포 시 장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공해상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호활동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상사고 발생 시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명확한 규정 마련(안 제2조)
- 다.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의무 조항 추가(안 제3조)
- 라. 내수면 및 배타적 경제수역(공해) 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 마.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6조)
- 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을 규정(안 제8조)
- 사.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규정(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5일(월)까지 목포시장(수산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 의견 제출처 :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59),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061-270-7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해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목포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10. “수난구조 협력기관”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난구조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로 한다.

- 1. 목포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 2. 목포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목포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어기 시기 와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다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명]

별지 서식 <신설 2015.12.21., 개정 2020.10.5.>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목 포 시 장 귀하

- |             |  |
|-------------|--|
| 청구인<br>제출서류 |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br>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1588호

## 입 법 예 고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 목 포 시 장

### 1. 폐지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3. 폐지 규칙안 : 별첨

### 4. 관계법령 : 「기발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예치금 잔액을 목포시 일반회계 전출

8. 입법예고 : '21. 10. 5. ~ 10. 26.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건축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061-270-3471, FAX 270-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1부.
-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목포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시행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목포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목포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1587호

## 입 법 예 고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 목 포 시 장

### 1. 폐지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3. 폐지 규칙안 : 별첨

### 4. 관계법령 : 「기발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예치금 잔액을 목포시 일반회계 전출

8. 입법예고 : '21. 10. 5. ~ 10. 26.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건축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061-270-3471, FAX 270-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목포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목포시 일반 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 - 170호

#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반마을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254필지, 56,948.1m<sup>2</sup>  
(경계확정) 250필지, 55,298.1m<sup>2</sup> (경계미확정) 4필지, 1,650.0m<sup>2</sup>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1. 10. 5. ~ 10. 19.(14일 이상)
6. 공람장소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8118, 3669, 3417)

붙 임 : 대반마을지구 사업완료조서 1부. 끝.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대반마을지구 지적확정조서											
번호	종전토지				번호	산정토지			면적증감 (㎡)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64		55,303.0		250		55,298.1	-4.9		
1	죽교동	405-57	임	182.0	1	405-57	임	190.2	8.2	학교법인 **학원	
2	죽교동	406	전	370.0	2	406	전	331.2	-38.8	한삼진	
3	죽교동	409	전	535.0	3	409	전	535.0	0.0	이*정	
4	죽교동	409-1	대	145.0	4	409-1	대	132.6	-12.4	강*구	
5	죽교동	409-2	전	249.0	5	409-2	전	262.1	13.1	최*봉	
6	죽교동	409-3	대	17.0	6	409-3	대	17.0	0.0	임*한	
7	죽교동	409-4	전	99.0	7	409-4	전	89.6	-9.4	강*구	
8	죽교동	409-5	전	66.0	8	409-5	전	88.6	22.6	목포시 (공원녹지과)	
9	죽교동	409-6	전	10.0	9	409-6	전	16.6	6.6	목포시 (공원녹지과)	
10	죽교동	409-8	대	185.0	10	409-8	대	170.3	-14.7	강*구	
11	죽교동	409-10	임	66.0	11	409-10	임	110.3	44.3	목포시 (공원녹지과)	
12	죽교동	409-11	대	33.0	12	409-11	대	16.6	-7.9	목포시 (공원녹지과)	분할
					13	409-17	대	8.5		목포시 (공원녹지과)	409-11번지 에서 분할
13	죽교동	409-12	대	26.0	14	409-12	대	26.0	0.0	최*봉	
14	죽교동	409-13	전	496.0	15	409-13	전	488.6	-7.4	박*혜	
15	죽교동	409-14	전	209.0	16	409-14	전	171.9	-11.7	목포시 (공원녹지과)	분할
					17	409-19	전	5.8		목포시 (공원녹지과)	409-14번지 에서 분할
					18	409-20	전	19.6		목포시 (공원녹지과)	409-14번지 에서 분할
16	죽교동	409-15	전	28.0	19	409-15	전	24.2	-3.8	목포시 (공원녹지과)	
17	죽교동	409-16	전	195.0	20	409-16	전	61.5	-23.7	목포시 (공원녹지과)	분할
					21	409-18	전	109.8		목포시 (공원녹지과)	409-16번지 에서 분할
18	죽교동	412-3	대	132.0	22	412-3	대	199.1	67.1	임*근	
19	죽교동	412-5	전	430.0	23	412-5	전	369.4	-60.6	임*근	
20	죽교동	412-6	도	23.0	24	412-6	도	257.4	234.4	국 (국토교통부)	
21	죽교동	412-7	대	17.0	25	412-7	대	17.0	0.0	국 (기획재정부)	

22	죽교동	412-8	전	86.0	26	412-8	전	128.8	42.8	임*근	
23	죽교동	413-1	전	179.0	27	413-1	전	179.0	0.0	김*곤	
24	죽교동	413-2	도	30.0	28	413-2	도	27.6	-2.4	학교법인 **학원	
25	죽교동	414-5	전	686.0	29	414-5	전	719.0	33.0	전*희	
26	죽교동	415-1	대	145.0	30	415-1	대	141.3	-3.7	학교법인 **학원	
27	죽교동	415-2	대	169.0	31	415-2	대	180.0	11.0	정*균	
28	죽교동	415-3	전	23.0	32	415-3	전	236.6	15.6	선*주	합병
29	죽교동	415-22	전	198.0						선*주	415-3번지 합병말소
30	죽교동	415-5	입	387.0	33	415-5	입	398.9	11.9	학교법인 **학원	
31	죽교동	415-6	전	132.0	34	415-6	전	135.3	3.3	학교법인 **학원	
32	죽교동	415-7	입	66.0	35	415-7	입	69.0	3.0	학교법인 **학원	
33	죽교동	415-8	전	307.0	36	415-8	전	325.5	18.5	학교법인 **학원	
34	죽교동	415-13	전	843.0	37	415-13	전	835.9	-7.1	선*주	
35	죽교동	415-17	전	149.0	38	415-17	전	135.9	-13.1	학교법인 **학원	
36	죽교동	415-18	전	1200.0	39	415-18	전	1,197.1	-2.9	선*주	
37	죽교동	415-28	대	734.0	40	415-28	대	721.1	-12.9	임*정외1 정*재외1	
38	죽교동	415-29	전	69.0	41	415-29	전	90.2	21.2	목포시 (공원녹지과)	
39	죽교동	415-33	대	139.0	42	415-33	대	153.5	14.5	이*정	
40	죽교동	415-34	전	122.0	43	415-34	전	71.8	-50.2	김*진	
41	죽교동	416-1	전	139.0	44	416-1	전	139.0	0.0	임*두	
42	죽교동	452-1	전	959.0	45	452-1	전	961.0	2.0	윤*기	
43	죽교동	452-2	전	1.0				0.0	-1.0	박*진	말소
44	죽교동	452-3	구	5.0	46	452-3	구	404.6	-27.4	국 (국토교통부)	합병
45	죽교동	486-6	구	410.0						국 (국토교통부)	452-3번지 합병말소
46	죽교동	486-9	구	17.0						국 (국토교통부)	452-3번지 합병말소
47	죽교동	452-6	대	14.0				0.0	-14.0	목포시 (회계과)	말소
48	죽교동	452-27	전	20.0				0.0	-20.0	박*진	말소
49	죽교동	452-28	입	106.0	47	452-28	입	149.0	43.0	정*재외1 임*정외1	
50	죽교동	452-29	구	7.0	48	452-29	구	3.8	-3.2	전남상사 **회사	
51	죽교동	469-1	전	75.0					-75.0	목포시 (도시계획과)	474-12번지 흡수말소
52	죽교동	470-1	대	14.0					-14.0	목포시 (도시계획과)	474-12번지 흡수말소

53	죽교동	472-1	대	133.0	49	472-1	대	133.0	0.0	목포시 (도시계획과)외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외1	목포시 공유
54	죽교동	473-1	대	13.0	50	473-1	대	13.0	0.0	학교법인 **학원	
55	죽교동	473-4	대	586.0	51	473-4	대	586.0	0.0	목포시외1 (도시계획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외1	목포시 공유
56	죽교동	474-1	대	106.0	52	474-1	대	117.8	11.8	국 (기획재정부)	
57	죽교동	474-2	잡	26.0	53	474-2	잡	15.8	-10.2	국 (기획재정부)	
58	죽교동	474-3	대	231.0	54	474-3	대	219.3	-11.7	국 (기획재정부)	
59	죽교동	474-4	전	155.0	55	474-4	전	273.0	-7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60	죽교동	474-8	전	188.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4-4번지 합병말소
61	죽교동	474-7	대	50.0	56	474-7	대	23.9	-26.1	목포시 (공원녹지과)	
62	죽교동	474-9	전	50.0	57	474-9	전	946.6	436.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63	죽교동	474-46	전	46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4-9번지 합병말소
64	죽교동	474-12	대	36.0	58	474-12	대	129.6	93.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65	죽교동	474-13	전	946.0	59	474-13	전	1,096.2	-368.8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66	죽교동	474-44	전	519.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4-13번지 합병말소
67	죽교동	474-26	전	354.0	60	474-26	전	354.0	0.0	배*합	
68	죽교동	474-27	전	198.0	61	474-27	전	126.9	-71.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69	죽교동	474-30	전	314.0	62	474-30	전	266.7	-19.7	김*강	분할
					63	474-53	전	27.6		김*강	474-30번지 에서 분할
70	죽교동	474-31	전	195.0	64	474-31	전	195.0	0.0	국 (기획재정부)	
71	죽교동	474-32	전	26.0	65	474-32	전	71.9	45.9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72	죽교동	474-42	전	456.0	66	474-42	전	449.2	-6.8	김*택	
73	죽교동	474-45	임	122.0	67	474-45	임	122.0	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74	죽교동	474-52	잡	80.0	68	474-52	잡	41.1	-38.9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75	죽교동	475	대	40.0	69	475	대	34.6	-5.4	학교법인 **학원	
76	죽교동	476	대	288.0	70	476	대	288.0	0.0	김*강	
77	죽교동	477-2	대	212.0	71	477-2	대	217.3	5.3	학교법인**학 원	

78	죽교동	478-1	전	60.0	72	478-1	전	67.4	7.4	학교법인 **학원	
79	죽교동	478-2	대	286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9번지 합병말소
80	죽교동	478-13	대	235.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9번지 합병말소
81	죽교동	479	대	109.0	73	479	대	3,549.8	345.8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82	죽교동	478-5	대	33.0	74	478-5	대	32.2	-0.8	학교법인 **학원	
83	죽교동	478-8	전	10.0	75	478-8	전	10.6	0.6	강*구	
84	죽교동	478-11	전	600.0	76	478-11	전	501.0	-25.8	목포시 (회계과)	분할
					77	478-17	전	73.2		목포시 (회계과)	478-11번지 에서 분할
85	죽교동	478-12	전	33.0	78	478-12	전	106.1	73.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86	죽교동	478-14	전	36.0	79	478-14	전	120.1	8.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87	죽교동	495-11	전	76.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78-14번지 합병말소
88	죽교동	478-16	전	260.0	80	478-16	전	239.9	-20.1	목포시 (회계과)	
89	죽교동	480-1	대	347.0	81	480-1	대	345.3	-1.7	학교법인 **학원	
90	죽교동	480-2	전	387.0	82	480-2	전	182.1	-204.9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91	죽교동	480-3	대	901.0	83	480-3	대	1,976.4	-122.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92	죽교동	480-5	대	159.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3	죽교동	480-6	대	3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4	죽교동	480-8	대	2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5	죽교동	481	대	324.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6	죽교동	496-16	대	569.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7	죽교동	496-17	대	96.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0-3번지 합병말소
98	죽교동	480-7	구	99.0	84	480-7	구	25.7	-73.3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99	죽교동	480-9	전	63.0	85	480-9	전	114.7	51.7	김*택	
100	죽교동	480-10	구	7.0	86	480-10	구	7.0	0.0	김*권	
101	죽교동	480-11	도	51.0	87	480-11	도	65.0	14.0	목포시 (도시계획과)	

102	죽교동	482	대	244.0	88	482	대	244.0	0.0	목포시 (도시계획과)의 1	목포시 공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외1	
103	죽교동	482-1	구	40.0	89	482-1	구	39.2	-0.8	학교법인 **학원	
104	죽교동	483	대	50.0	90	483	대	48.8	-1.2	송*남	
105	죽교동	484	대	631.0	91	484	대	660.5	29.5	학교법인 **학원	
106	죽교동	484-1	전	20.0	92	484-1	전	33.9	13.9	김*택	
107	죽교동	484-2	전	13.0	93	484-2	전	13.0	0.0	김*호	
108	죽교동	484-3	전	288.0	94	484-3	전	269.7	-18.3	천*단	
109	죽교동	484-4	구	10.0	95	484-4	구	2.2	-7.8	학교법인 **학원	
110	죽교동	484-5	구	10.0	96	484-5	구	7.6	-2.4	학교법인 **학원	
111	죽교동	485	대	238.0	97	485	대	239.4	1.4	학교법인 **학원	
112	죽교동	486-1	전	169.0	98	486-1	전	169.0	0.0	임*두	
113	죽교동	486-2	전	79.0	99	486-2	전	74.5	-4.5	이*상	
114	죽교동	486-4	대	30.0	100	486-4	대	37.6	7.6	학교법인 **학원	
115	죽교동	486-5	대	46.0	101	486-5	대	45.9	-0.1	학교법인 **학원	
116	죽교동	486-12	대	99.0	102	486-12	대	91.1	-7.9	학교법인 **학원	
117	죽교동	486-13	대	169.0	103	486-13	대	160.9	-8.1	학교법인 **학원	
118	죽교동	486-14	전	1031.0	104	486-14	전	1,011.3	-19.7	하*환	
119	죽교동	486-15	임	317.0	105	486-15	임	310.0	-7.0	학교법인 **학원	
120	죽교동	486-20	구	119.0	106	486-20	구	106.9	-12.1	학교법인 **학원	
121	죽교동	486-21	대	50.0	107	486-21	대	55.7	5.7	학교법인 **학원	
122	죽교동	486-22	대	126.0	108	486-22	대	105.5	-20.5	이*원	
123	죽교동	486-23	임	50.0	109	486-23	임	38.0	-12.0	학교법인 **학원	
124	죽교동	486-24	대	122.0	110	486-24	대	130.7	8.7	이*원	
125	죽교동	486-25	대	60.0	111	486-25	대	82.2	22.2	학교법인 **학원	
126	죽교동	486-26	대	228.0	112	486-26	대	224.0	-4.0	학교법인 **학원	
127	죽교동	486-27	임	20.0	113	486-27	임	24.7	4.7	학교법인 **학원	
128	죽교동	486-28	대	198.0	114	486-28	대	167.5	-30.5	강*웅	
129	죽교동	486-29	대	17.0	115	486-29	대	15.2	-1.8	학교법인 **학원	
130	죽교동	486-30	전	30.0	116	486-30	전	110.5	47.5	고*열	합병
131	죽교동	486-63	전	33.0						고*열	486-30번지 합병말소

132	죽교동	486-31	대	33.0	117	486-31	대	33.0	0.0	이*상	
133	죽교동	486-32	전	169.0	118	486-32	전	172.9	3.9	고*열	
134	죽교동	486-34	전	288.0	119	486-34	전	288.0	0.0	송*남	
135	죽교동	486-35	임야	30.0	120	486-35	임야	24.5	-5.5	이*상	
136	죽교동	486-36	대	129.0	121	486-36	대	137.4	8.4	학교법인 **학원	
137	죽교동	486-37	전	69.0	122	486-37	전	69.0	0.0	하*두	
138	죽교동	486-38	구	109.0	123	486-38	구	118.1	9.1	목포시 (도시계획과)외 1	
										학교법인 **학원	목포시 공유
139	죽교동	486-39	전	60.0	124	486-39	전	77.1	17.1	박*례	
140	죽교동	486-40	전	98.0	125	486-40	전	111.2	-46.8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합병
141	죽교동	486-69	전	33.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6-40 합병말소
142	죽교동	486-70	구	7.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6-40 합병말소
143	죽교동	486-72	구	20.0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486-40 합병말소
144	죽교동	486-41	전	18.0	126	486-41	전	18.0	0.0	목포시 (도시계획과)	
145	죽교동	486-42	전	13.0	127	486-42	전	37.1	11.1	강*웅	합병
146	죽교동	486-65	전	13.0						강*웅	486-42번지 합병말소
147	죽교동	486-44	전	36.0	128	486-44	전	36.0	0.0	천*단	
148	죽교동	486-45	전	10.0	129	486-45	전	97.4	18.4	천*단	합병
149	죽교동	486-64	전	69.0						천*단	486-45번지 합병말소
150	죽교동	486-47	대	23.0	130	486-47	대	28.7	5.7	학교법인 **학원	
151	죽교동	486-48	대	89.0	131	486-48	대	75.0	-14.0	학교법인 **학원	
152	죽교동	486-49	대	298.0	132	486-49	대	279.2	-18.8	학교법인 **학원	
153	죽교동	486-50	대	126.0	133	486-50	대	150.6	24.6	학교법인 **학원	
154	죽교동	486-51	대	83.0	134	486-51	대	77.0	-6.0	학교법인 **학원	
155	죽교동	486-52	대	23.0	135	486-52	대	27.0	4.0	이*원	
156	죽교동	486-54	대	56.0	136	486-54	대	68.7	12.7	이*원	
157	죽교동	486-55	전	46.0	137	486-55	전	46.0	0.0	하*두	
158	죽교동	486-56	대	46.0	138	486-56	대	47.9	1.9	학교법인 **학원	
159	죽교동	486-57	전	132.0	139	486-57	전	105.9	0.0	염*자	분할
					140	486-84	전	26.1		염*자	486-57번지 에서 분할
160	죽교동	486-58	전	476.0	141	486-58	전	494.4	18.4	이*상	
161	죽교동	486-59	전	26.0	142	486-59	전	8.7	-17.3	고*열	

162	죽교동	486-60	전	43.0	143	486-60	전	21.5	-21.5	고*열	
163	죽교동	486-61	전	20.0	144	486-61	전	15.3	-4.7	천*단	
164	죽교동	486-62	전	50.0	145	486-62	전	32.6	-17.4	천*단	
165	죽교동	486-66	구거	40.0	146	486-66	구거	9.0	-31.0	이*상	
166	죽교동	486-67	구	40.0	147	486-67	구	40.0	0.0	송*남	
167	죽교동	486-68	구거	30.0	148	486-68	구거	39.0	9.0	이*상	
168	죽교동	486-78	구	24.0	149	486-78	구	27.6	3.6	국 (국토교통부)	
169	죽교동	486-81	전	38.0	150	486-81	전	59.9	21.9	목포시 (도시계획과)	
170	죽교동	486-82	전	661.0	151	486-82	전	648.7	-12.3	주*록	
171	죽교동	486-83	전	123.0	152	486-83	전	123.0	0.0	목포시 (건설과)	
172	죽교동	487-2	대	876.0	153	487-2	대	855.4	-20.6	학교법인 **학원	
173	죽교동	487-3	대	638.0	154	487-3	대	562.2	-75.8	박*원	
174	죽교동	487-4	전	60.0	155	487-4	전	58.5	-1.5	임*석	
175	죽교동	487-8	구	132.0	156	487-8	구	133.5	1.5	학교법인 **학원	
176	죽교동	487-10	구	36.0	157	487-10	구	13.5	-22.5	학교법인 **학원	
177	죽교동	487-11	대	331.0	158	487-11	대	331.0	0.0	정*윤외7	
										정*심외7	
										정*지외7	
										정*엽외7	
										정*정외7	
										정*화외7	
										박*덕외7	
황*례외7											
178	죽교동	487-13	전	99.0	159	487-13	전	81.3	-17.7	학교법인 **학원	
179	죽교동	487-14	전	398.0	160	487-14	전	389.3	-8.7	문*수외2	
										서*단외2	
										문*희외2	
180	죽교동	487-15	구	109.0	161	487-15	구	133.9	24.9	학교법인 **학원	
181	죽교동	487-18	대	26.0	162	487-18	대	35.6	9.6	학교법인 **학원	
182	죽교동	487-19	전	1514.0	163	487-19	전	1,482.4	-31.6	주*석	
183	죽교동	487-20	전	40.0	164	487-20	전	37.2	-2.8	목포시 (공원녹지과)	
184	죽교동	487-21	전	370.0	165	487-21	전	374.0	4.0	학교법인 **학원	
185	죽교동	487-22	전	20.0	166	487-22	전	20.0	0.0	천*중	
186	죽교동	487-23	대	26.0	167	487-23	대	27.3	1.3	학교법인 **학원	
187	죽교동	487-25	전	23.0	168	487-25	전	23.0	0.0	권*순	
188	죽교동	487-27	전	499.0	169	487-27	전	499.0	0.0	정*심외6	
										정*지외6	
										정*엽외6	
										정*정외6	
										정*화외6	
										박*덕외6	
박*외6											

189	죽교동	487-28	전	43.0	170	487-28	전	43.0	0.0	서*단외2	
										문*회외2	
										문*수외2	
190	죽교동	487-29	전	5.0	171	487-29	전	5.0	0.0	문*회외2	
										서*단외2	
										문*수외2	
191	죽교동	488-1	대	132.0	172	488-1	대	140.6	8.6	학교법인 **학원	
192	죽교동	488-2	대	109.0	173	488-2	대	93.7	-15.3	학교법인 **학원	
193	죽교동	488-3	전	298.0	174	488-3	전	284.1	-13.9	학교법인 **학원	
194	죽교동	488-4	전	73.0	175	488-4	전	49.6	-11.6	목포시 (공원녹지과)	분할
					176	488-16	전	11.8		목포시 (공원녹지과)	488-4번지에 서 분할
195	죽교동	488-5	대	132.0	177	488-5	대	118.7	-13.3	학교법인 **학원	
196	죽교동	488-6	대	69.0	178	488-6	대	68.5	-0.5	학교법인 **학원	
197	죽교동	488-7	전	79.0	179	488-7	전	71.9	-7.1	맹*주외4	
										맹*숙외4	
										맹*숙외4	
										맹*수외4	
198	죽교동	488-8	대	208.0	180	488-8	대	206.0	-2.0	학교법인 **학원	
199	죽교동	488-9	전	23.0	181	488-9	전	23.0	0.0	천*중	
200	죽교동	488-10	대	7.0	182	488-10	대	7.6	0.6	학교법인 **학원	
201	죽교동	488-11	전	109.0	183	488-11	전	109.0	0.0	추*수	
202	죽교동	488-12	대	76.0	184	488-12	대	73.8	-2.2	학교법인 **학원	
203	죽교동	488-13	전	460.0	185	488-13	전	439.4	-20.6	학교법인 **학원	
204	죽교동	488-14	대	106.0	186	488-14	대	110.6	4.6	학교법인 **학원	
205	죽교동	488-15	전	89.0	187	488-15	전	94.0	5.0	맹*주외4	
										맹*숙외4	
										맹*숙외4	
										맹*수외4	
206	죽교동	489	대	294.0	188	489	대	294.7	0.7	학교법인 **학원	
207	죽교동	489-1	대	26.0	189	489-1	대	25.6	-0.4	학교법인 **학원	
208	죽교동	489-2	대	20.0	190	489-2	대	15.8	-4.2	학교법인 **학원	
209	죽교동	490	대	261.0	191	490	대	249.7	-11.3	학교법인 **학원	
210	죽교동	491-1	전	69.0	192	491-1	전	69.0	0.0	서*주	
211	죽교동	491-2	대	46.0	193	491-2	대	49.6	3.6	학교법인 **학원	
212	죽교동	491-3	전	307.0	194	491-3	전	270.5	-36.5	주*석	
213	죽교동	491-4	대	136.0	195	491-4	대	120.0	-16.0	학교법인 **학원	

214	죽교동	491-7	대	2717.0	196	491-7	대	2,657.9	-59.1	학교법인 **학원	
215	죽교동	491-8	전	132.0	197	491-8	전	138.7	6.7	김*	
216	죽교동	491-9	대	453.0	198	491-9	대	430.2	-22.8	학교법인 **학원	
217	죽교동	491-11	구	99.0	199	491-11	구	89.5	-9.5	학교법인 **학원	
218	죽교동	491-12	전	1269.0	200	491-12	전	1,252.3	-16.7	박*홍외1 문*희외1	
219	죽교동	491-14	대	63.0	201	491-14	대	62.1	-0.9	학교법인 **학원	
220	죽교동	491-15	전	296.0	202	491-15	전	296.0	0.0	목포시 (공원녹지과)	
221	죽교동	491-16	전	347.0	203	491-16	전	335.9	-11.1	주*석	
222	죽교동	491-17	대	228.0	204	491-17	대	199.1	-28.9	학교법인 **학원	
223	죽교동	491-18	대	13.0	205	491-18	대	21.6	8.6	학교법인 **학원	
224	죽교동	491-19	대	50.0	206	491-19	대	70.4	20.4	학교법인 **학원	
225	죽교동	491-20	전	66.0	207	491-20	전	66.7	0.7	김*권외1 김*훈외1	
226	죽교동	491-21	전	129.0	208	491-21	전	154.2	25.2	추*수	
227	죽교동	491-22	대	294.0	209	491-22	대	276.5	-17.5	학교법인 **학원	
228	죽교동	491-23	대	575.0	210	491-23	대	585.3	10.3	주*석	
229	죽교동	491-24	전	350.0	211	491-24	전	401.2	51.2	조*엽	
230	죽교동	491-25	대	26.0	212	491-25	대	24.0	-2.0	학교법인 **학원	
231	죽교동	491-26	대	17.0	213	491-26	대	11.7	-5.3	학교법인 **학원	
232	죽교동	491-27	전	126.0	214	491-27	전	126.0	0.0	추*수	
233	죽교동	491-33	전	50.0	215	491-33	전	51.0	1.0	추*수	
234	죽교동	491-34	전	76.0	216	491-34	전	77.7	1.7	맹*주외4	
										맹*숙외4	
										맹*숙외4	
										맹*수외4	
235	죽교동	491-35	대	40.0	217	491-35	대	50.8	10.8	학교법인 **학원	
236	죽교동	491-36	대	93.0	218	491-36	대	105.2	12.2	학교법인 **학원	
237	죽교동	491-37	전	66.0	219	491-37	전	62.0	-4.0	목포시 (공원녹지과)	
238	죽교동	491-38	대	106.0	220	491-38	대	106.0	0.0	장*암	
239	죽교동	491-39	전	317.0	221	491-39	전	330.9	13.9	맹*주외4	
										맹*숙외4	
										맹*숙외4	
										맹*수외4	
240	죽교동	491-40	대	26.0	222	491-40	대	29.3	3.3	학교법인 **학원	
241	죽교동	491-41	대	63.0	223	491-41	대	62.2	-0.8	학교법인 **학원	

242	죽교동	491-42	대	40.0	224	491-42	대	38.3	-1.7	학교법인 **학원	
243	죽교동	491-45	전	417.0	225	491-45	전	402.1	-14.9	추*수	
244	죽교동	491-46	전	73.0	226	491-46	전	71.9	-1.1	김*권외2	
										김*민외2	
										김*훈외2	
245	죽교동	491-47	전	79.0	227	491-47	전	90.6	11.6	김*권외2	
										김*민외2	
										김*훈외2	
246	죽교동	491-48	전	20.0	228	491-48	전	26.0	6.0	추*수	
247	죽교동	491-49	전	13.0	229	491-49	전	17.6	4.6	추*수	
248	죽교동	491-52	전	159.0	230	491-52	전	159.0	0.0	박*경	
249	죽교동	495	대	268.0	231	495	대	268.0	0.0	학교법인 **학원	
250	죽교동	495-2	대	238.0	232	495-2	대	165.5	-72.5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251	죽교동	495-4	전	50.0	233	495-4	전	68.6	18.6	천*광	
252	죽교동	495-6	임	175.0	234	495-6	임	170.9	-4.1	학교법인 **학원	
253	죽교동	496-3	대	992.0	235	496-3	대	1,001.3	9.3	학교법인 **학원	
254	죽교동	496-4	대	529.0	236	496-4	대	513.2	-15.8	학교법인 **학원	
255	죽교동	496-5	구	43.0	237	496-5	구	43.4	0.4	학교법인 **학원	
256	죽교동	496-8	대	96.0	238	496-8	대	190.3	8.3	천*광	합병
257	죽교동	496-11	대	86.0						천*광	496-8번지 합병말소
258	죽교동	496-9	대	145.0	239	496-9	대	151.3	6.3	학교법인 **학원	
259	죽교동	496-10	대	512.0	240	496-10	대	536.3	24.3	학교법인 **학원	
260	죽교동	496-12	대	416.0	241	496-12	대	425.2	9.2	학교법인 **학원	
261	죽교동	496-13	전	370.0	242	496-13	전	366.5	-3.5	강*구	
262	죽교동	496-14	대	119.0	243	496-14	대	137.8	18.8	학교법인 **학원	
263	죽교동	496-15	전	357.0	244	496-15	전	324.0	-33.0	염*자	
264	죽교동	657	도	1318.0	245	657	도	336.6	156.8	국 (국토교통부)	분할
					246	657-6	도	58.2		국 (국토교통부)	657번지에서 분할 452-6회계과 거부
					247	657-7	도	558.3		국 (국토교통부)	657번지에서 분할
					248	657-8	도	75.3		국 (국토교통부)	657번지에서 분할
					249	657-9	도	136.5		국 (국토교통부)	657번지에서 분할
					250	657-10	도	309.9		국 (국토교통부)	657번지에서 분할

목포시 공고 제2021-1592 호

##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주민’으로 일괄 정비를 위한 제명 및 관련 조문 일부개정(안 제1조 외)
  - 가.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나.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 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10조)
  - 마.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제3조)

####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4. 신·구 조문 대비표 : : 붙임

## 5. 관계 법령

- 「섬 발전 촉진법」

## 6. 관계기관(부서)의 의견 :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7.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 8. 입법예고기간 : 2021. 10. 5. ~ 10. 26. (22일간)

##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6.까지 목포시장(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7), 직접방문 등

## 11.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061-270-8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를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도서지역주민” 을 “섬지역 주민”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지역주민” 을 “섬지역 주민” 으로, “도서에” 를 “섬에” 로, “도서인” 을 “섬인” 으로 한다.

- 1. “섬” 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서에” 를 “섬에” 로, “도서간을 이동하는 도서지역주민” 을 “섬간을 이동하는 섬지역 주민”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지역주민” 을 “섬지역 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지역주민” 을 “섬지역 주민”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도서지역주민” 을 “섬지역 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지역주민이” 를 “섬지역 주민이” 로, “도서지역주민 승선권” 을 “섬지역 주민 승선권” 으로 한다.

제11조 중 “도서민” 을 “섬 주민”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 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 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 로 한다.

②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도서 지역” 을 “섬지역” 으로 한다.

③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도서” 를 “섬” 으로 한다.

④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서종합개발” 을 “섬종합개발” 로 한다.

⑤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도서 지역” 을 “섬지역”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u>목포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도서</u>”란 「<u>도서개발촉진법</u>」 제2조에 따라 <u>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u></p> <p>2. “<u>도서지역주민</u>”이란 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u>도서</u>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주지가 <u>도서인</u> 자를 포함한다)</p>	<p><u>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섬지역 주민</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u>섬</u>”이란 「<u>섬 발전 촉진법</u>」 제2조에 따라 <u>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u></p> <p>2. “<u>섬지역 주민</u>”이란 ----- ----- <u>섬에</u> ----- ----- ----- ----- <u>섬인</u> ----- --</p>

3. ~ 5. (생략)

제3조(운임지원 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그 승선일 기준으로 목포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목포시 관할 도서간을 이동하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 1. (생략)
- 2. 도서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터미널 이용료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생략)

②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도서지역주민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운임지원 대상) -----  
-----  
섬에 -----  
----- 섬간을 이  
동하는 섬지역 주민-----.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섬지역주민-----  
-----  
-----  
-----.

- 1. (현행과 같음)
- 2. 섬지역 주민-----  
-----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섬지역 주민 -----  
-----  
-----  
-----.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도서지역주민이 아닌 자가 도서지역주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도서민의 운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 섬지역 주민이 ----- 섬지역 주민 승선권-----  
-----.

제11조(준용) 섬 주민-----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